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001
----------	------

2020년 12월 17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0년 10월 16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0년 10월 26일

다. 상정일자 :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6차

환경수자원위원회 2020년 12월 17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서울특별시장]

가. 제안이유

-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(제로페이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입장료등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1)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

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2) 입법예고('20. 9. 2.~9. 22.)결과: 의견없음

4. 검토보고 요지 [수석전문위원 : 이재효]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(서울식물원, 서울대공원) 입장료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1년 연장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- 제로페이를 이용할 경우 서울시 공원 입장료 및 공원시설이용료를 감면 하도록 하는 것은 2019년 5월 동 조례 개정¹⁾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 하였고 당시 요금 감면기한은 부칙을 통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(부칙 제2조)하였으나, 감면기한 종료에 앞서 동 조례 부칙 개정²⁾(2019.11.26)을 통해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 바 있음.
- 금번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연장한 감면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‘제로페이 이용 활성화’를 명목으로 감면기한을 추가로 1년 더 연장하는 것이며,

1) 제20조(요금의 감면)

④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)으로 별표 1의 입장료나 별표 2의 공원시설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.
<신설 2019. 5. 2.>

1. 별표 1의 입장료 :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. 다만,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2. 별표 2의 공원시설 이용료 :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

부 칙

제2조(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)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2)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의안번호 10-01138, 원안가결)

- 감면기한 연장 : 2019년 12월 31일 → 2020년 12월 31일
- 제출일(2019.10.16.), 상정일(2019.11.26.), 의결일(2019.12.16.), 공포일(2019.12.31.)

직전 조례개정 당시 제시한 제안사유를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음.

- 푸른도시국에서는 서울식물원과 서울대공원에 한해 2019년 5월부터³⁾ 현재까지 제로페이 사용 시 입장료 30%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나, 전년 대비 제로페이 결제 비율은 결제 건수의 경우 1% 증가(9→10%)에 그쳤고 결제액 대비 사용률도 8%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.

〈공원입장료 제로페이 결제 현황(2019.5월~2020.9월)〉

연도	시설	전체 결제		제로페이 결제				
		건수 (건)	결제액 (백만원)	건수 (건)	건수 대비 사용률(%)	결제액 (백만원)	결제액 대비 사용률(%)	할인액 (백만원)
	합계	2,057,200	7,514	193,870	9	631	8	270
2020 9월	소계	685,915	2,635	68,417	10	217	8	93
	서울 식물원	99,930	415	21,063	21	69	17	29
	서울 대공원	585,985	2,220	47,354	8	148	7	63
2019	소계	1,371,285	4,879	125,453	9	415	8	178
	서울 식물원	349,309	1,457	80,612	23	266	18	114
	서울 대공원	1,021,976	3,422	44,841	4	149	4	64

- 금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공원 시설 운영이 중단⁴⁾됨에 따라 이용객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다고는 하지만, 전체 결제 대비 제로페이 결제 비율을 볼 때 제로페이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.
- 따라서 ‘제로페이 이용 활성화’를 명목으로 한 차례 감면기한을 연장했지만 제로페이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면기한을 재차 연장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.

3) 입장료 감면 시행일 : 서울식물원(2019년 5월 2일), 서울대공원(2019년 5월 3일)

4) 서울식물원은 187일간 실내시설 운영 중단, 서울대공원은 238일간 실내동물사(13개소) 및 식물원 운영 중단

〈코로나19 관련 공원시설 운영 중단 현황〉 (2020.12.11.기준)

기 관 명	기 간	일수	운영중단 내용
서울식물원	2.25.~5.5.	71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시설부분폐쇄(공원개방유지) - 입장료 미부과에 따른 감면혜택 중지
	5.30.~ 7.21.	53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중단 시설 - 식물문화센터(온실, 1층·4층 카페, 카페테리아 등 사용수익허가시설, 씨앗도서관, 식물전문도서관, 기프트샵),
	8.18.~10.12.	56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마곡문화관 - 숲문화학교
	12.5.~12.11(현재)	7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린이 정원학교 - 주차장 지하부(지상주차장은 운영)
	총 일수	187일	
서울대공원	2.25.~7.31.	158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실내시설 일부중단(서울대공원 개방유지) - 입장료 부과 및 감면혜택 지속
	8.19.~10.16.	59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중단 시설 - 실내동물사(13개소), 식물원
	11.21.~12.11(현재)	21일	
	총 일수	238일	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수정안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조례 제7119호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“2020년 12월 31일”을 “2021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 < 제7119호, 2019. 5. 2.></p> <p>제2조(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) 제2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<u>2020년 12월 31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 < 제7119호, 2019. 5. 2.></p> <p>제2조(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) ----- ----- <u>2021년 12월 31일</u>-----.</p>